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19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재정비 및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 예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4조)
-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3항)
- 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신설(안 제8조)
- 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신설(안 제13조)
- 바.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 정비(안 제14조)

## 4.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연구 용역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용역결과의 제출 및 공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심의대상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sup>1)</sup>’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심의대상을 기존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은 3천만원)에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확대함.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類似度) 검사결과 확인 및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14조에서는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용역 제출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됨.

기한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방안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신설하여 용역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능감을 확보하였다는 데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2023. 6.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